

석·박사 통합과정 운영규정

제 정 : 2019. 4. 17

개 정 : 2022. 6. 13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(이하 “통합과정”이라 한다)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통합과정이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 학위취득 없이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 및 운영) ① 통합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학과에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단일 교과과정으로 편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4조(입학정원) 통합과정의 입학정원은 매 학년도 박사과정 입학정원에 포함된다. 모집시기별 모집여부 및 선발인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5조(학위과정의 인정) ① 통합과정의 학생으로서 3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, 전공 24학점을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박사과정으로 인정하며, 그 이전에는 석사과정으로 인정한다.

② 전항에도 불구하고, 연계과정을 이수하고 통합과정으로 진학한 학생이 2개 학기까지 전공 24학점을 취득한 경우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.

제6조(중도 포기) ① 통합과정으로 입학하였으나 석사학위의 취득을 끝으로 학업을 마치고자 하여 통합과정의 학적을 포기하는 것을 중도 포기라 한다. 중도 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‘통합과정 중도포기 요청서’를 소속 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중도 포기자의 학적은 해당 연도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석사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. 단, 이후에 다시 통합과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.

③ 중도 포기자로 인해 발생한 박사과정의 여석은 해당 연도 박사과정 여석 수에 합산한다.

제7조(석사학위 취득) ① 통합과정의 학생 또는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

1.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3개 학기 이상 등록 후 전공과목 24학점 이상 취득하고,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석사학위논문을 제출 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 논문대체로 연구논문을 선택한 학생은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 단, 석사학위 취득신청은 6학기(연계과정 5학기)까지 가능하다.

2. 연계과정을 이수하고 통합과정으로 진학한 학생은 3개 학기 이상 등록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으로 할 수 있다.

② 중도 포기자가 석사학위과정으로 학적을 변경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과정의 졸업으로 인정한다.

제8조(학위청구 자격시험 및 연구윤리) ① 통합과정의 학생이 학위청구를 하는 경우, 학칙 시행세칙 제13조(학위청구 자격시험), 제14조(외국어시험)와 제15조(종합학력시험 및 연구윤리이수)의 규정을 따른다. 단, 석사학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중 석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따른다.

② 석사학위청구 이력이 있는 학생이 박사학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, 석사학위청구를 위하여 기 합격한 종합학력시험 과목 및 외국어시험과 기 이수한 연구윤리교육을 박사학위청구를 위한 것으로 인정한다.

제9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과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.

부칙(2022.6.13.)

제1조(시행일) 이 대학원 규정은 2022.9.1부터 시행한다.